파주시 고시 제2026-463호

지적기준점 폐기 고시

지적기준점 중 망실된 지적기준점 표지에 대하여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0조(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)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지적기준점을 폐기 고시합니다.

2026년 11월 19일

파 주 시 장

※ 측량성과 보관장소 : 토지정보과(폐기점수 : 지적도근점 9점)

구분	기준점명	종선좌표	횡선좌표	소재지	표지재질	조사연월일
붙		임		참		조

붙임 기준점 고시목록 1부.